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(주호영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국가공무원 임용을 제한함(안 제33조 및 제 69조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병 섭)